

第16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4.2.10.~2.12.)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6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157
II.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159
III.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65
IV. 부록	
1. 의사일정안 .....	189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91
3. 서면답변서 .....	197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2월 10일 (화요일) 11시 02분

## 開會式順(第163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2분 개식)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 ● 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4분 폐식)

지금부터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2월 10일 (목요일) 11시 04분

## 議事日程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6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6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4분 개의) ● 의사과장 김장한

###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경과보고

###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  
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 의사과장 김장한

의사과장 김장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1월 3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수  
교육위원 외 4인으로부터 지난 제1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보류한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  
안 처리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2월 2일 공고 제2004-2호로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

[제163회-제1차 본회의]

를 공고하였습니다.

집회공고 이후 2004년 2월 5일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제16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같은날 집행청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제출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0일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2004년 1월 17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과 2004년 1월 16일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2004년 1월 17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3일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각각 원안가결 되었으며,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은 2004년 2월 2일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였던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6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9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산회 후에는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안과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11시에는 교육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고, 또한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8일 청주시학 교어머니회연합회장 등 18명을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한 내용에 대한 분석과 Bio교육문화회관 시설 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안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1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일 의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기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정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현재 2,823명에서 148명이 증원된 2,971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정원운영 방식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변경되고 따라서 총정원 2,823명을 148명이 증원된 2,971명으로 변경하여 증원되는 인원은 주로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교단지원행정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이 간단하며,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2월 11일 간담회시 자세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진옥경 위원

의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상일

예.

● 진옥경 위원

표준정원의 증원의 근거가 지금 여기에는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증원의 근거를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 의장 이상일

네, 진옥경 위원님께서 148명을 증원하는 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니깐, 지금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바뀌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죠?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 의장 이상일

그 자료 내용을 진옥경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자료는 곧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 되셨습니까?

● 진옥경 위원

예.

● 의장 이상일

다른 이의 없으시죠?

[제163회-제1차 본회의]

(모두 침묵)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성영용 위원님과 송대헌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이상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총무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2)
- ▶ 서면답변서(별첨 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2월 12일 (목요일) 11시 01분

## 議事日程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01분 개의)

조례중개정조례안

###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임흥빈 중등교육과장께서 중등인사작업 관리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

(11시 02분)

### ●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방식이 총정원에서 표준정원제로 변경되고, 따라서 총정원 2,823명을 148명이 증원된 2,971명으로 변경하여 증원되는 인원은 주로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교단지원행정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으

[제163회-제2차 본회의]

로 개정내용이 간단하며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은 바가 있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안

(11시 03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규강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고규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 발언대로 나눔)

● 고규강 위원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62회 임시회의시 집행청에서 제출한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8일 청주시 학교어머니회연합회장 외 17명으로부터 바이오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2월 10일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설부지도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2월 11일 교육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거론된 질의사항들에 대하여 각자 교육위원님께서 맡아 질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질의의 일관성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몇몇 위원님들의 합의로 제가 일괄해서 집행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품성 함양과 정서 순화를 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하면서 그 명칭을 가칭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였는데, 기관의 명칭을 보면 충청북도의 기관인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시설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임을 상징하는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문화회관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계획안에 보면 바이오학습관이 1,200명 규모로 전체규모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체험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면적을 20% 안으로 될 수 있도록 축소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집행청 관계관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총 소요재원 195억원 중 40억원만 기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 155억원의 소요재원에 대하여는 지방 교육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나머지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 대책은.

둘째, 교육문화회관 설립 예정 지역에 비행장이 있어 비행기 소음이 문제시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장기적으로 볼 때 바이오산업은 오송지역이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어 바이오 관련 시설이 오송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바이오 관련 시설 공간을 가변성 있게 설계하여 추후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넷째, 교육문화회관 건축시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설계와 전용공간을 어느

정도 갖출 예정인지, 또한 장애인 이용 시설은 당초 설계시부터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다섯째, 시설이 완공된 후 교육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교육문화회관은 학생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이용하게 된다면 충청북도에서도 일정부분의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건립후 운영계획에 대한 대책은?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집행청에 서는 이상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규강 위원 자리로 돌아감)

### ●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옥경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네, 진옥경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 발언대로 나옴)

### ● 진옥경 위원

먼저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된 부분들은 앞서 고 위원께서 수렴해서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저마다 맡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저도 제 자리에서 할 줄 알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앞에 나와서 하게 되니까 더 공식적인 성격을 띠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교육위원 진옥경입니다.

충청북도 학생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교육문화회관 건립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예산이 통과되었음에도 환영하는 의견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 우려는 대체로 선정의 절차, 접근성, 시설 활용도, 주변 환경 문제 등으로 요약됩니다.

교육문화회관이 도민 숙원시설이니만큼 다양한 우려들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치계획 심의를 위해 다음 몇가지를 질의하오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간 가장 문제시 되었던 것은 단체장들의 협의에 의해 장소 및 시설의 성격이 사전에 결정되고 난 후 단 하나의 장소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 조사 및 공청회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민의 여론에 근거하기보다 단체장의 일방통행적인 결정을 통해 독단적으로 사업이 결정되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교육시설 건립 시 이 같은 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교육감께서는 확약할 수 있는지요?

두 번째, 2004년 2월 10일 교육위원 현장방문 시 제시된 조성계획도와 종전의 계획도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문화회관 내 바이오 전시관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최첨단의 자료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현재 충청북도로부터 보장받은 이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건립 예정지는 청주시 외곽 순환도로에 인접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가용 이용자에게 한정된 편리성일 뿐 서민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확보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단지 내 조이월드에는 첨단 영상체험과 이벤트광장, 인공호수, 야생화정원, 라인스케이트, 킥보드장, 스케이팅보드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밖의 놀이기구 단지는 없습니까?

여섯 번째, 조이월드, 골프장 등과의 자연스런 공간 분리 독립성 유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조이월드 및 골프장, 컨벤션센터 등 주변 시설 설립계획과 교육문화회관 건립 시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시차가 있을 경우 기설립된 교육문화회관 이용자를 위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계획입니까?

여덟 번째, 밀레니엄 타운 예정지 주변의 러브호텔 난립 방지 등 교육적 환경 조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홉 번째, 교육문화회관과 함께 건립한다는 종합스포츠허브 및 산남3지구 교육정보원 건립 계획이 함께 제시되었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하는데 예산 확보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입니까? 혹시 주중동 건립을 기정 사실화하기 위한 분홍빛 청사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요?

열 번째, 교육문화회관을 도(道)와 공동 운영한다면 관리운영 체계나 책임소재 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를 조정, 해결할 운영 조례는 별도로 제정할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옥경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곧 바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천호

예, 바로 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일

그러면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김천호

존경하는 이상일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현안사업인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고규강 부의장님과 진옥경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특별히 고마움을 표시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일부를 말씀드리고, 보다 소상한 내용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가칭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 명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건립은 충북교육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교육재정 형편상 추진되지 못하던 중 2002년 10월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께서 바이오엑스포전시관 방문시 바이오엑스포 전시물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 바이오교육문화

회관 건립 계획을 보고하여 재정지원 약속을 받고 충청북도로부터 건립부지 7,000평의 사용승낙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동 명칭은 우리 지역의 핵심산업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와 바이오 엑스포 전시물의 교육적 활용, 그리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바이오 기초 체험 학습공간을 배치하여 특성화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선 가칭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명칭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바이오 관련 시설 면적 축소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관련 시설은 전시관 900평과 정보관 300평, 합계 1,200평이며, 전시관은 생명관, 의학관, 미래관으로 배치할 예정으로, 당초 충청북도에서 바이오 엑스포 전시물의 전시관 시설로 1,200평을 요구하였으나 건축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면적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관 300평은 영상박물관, 디지털도서관, 정보개발센터를 배치하여 바이오 관련 정보는 물론, 학생들의 폭넓은 정보 습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시물의 세부 전시계획 등을 고려,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

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고규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업비 추가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195억원으로 국고에서 150억원, 자체예산에서 4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국고재원 중 40억원은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며, 추가 소요액 155억원 중 국고 재원 11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특별교부금 중 일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의 자체재원으로

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교육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비행기 소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건축시 외벽시공은 알루미늄 복합판넬준공벽으로 하고, 창호는 기밀시스템 창호 및 방음유리로 시공하여 실내 환기는 기계환기로 시공하겠습니다.

시설배치시 실내놀이마당 등 소음에 영향이 적은 시설은 가급적 외부에 배치하고, 영화 및 음악감상실 등 소음에 민감한 시설은 내부에 배치하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바이오 관련 시설을 향후 다른 시설로 언제든지 가변성 있도록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시설은 향후 바이오 체험 학습장으로 기능이 다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장애인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시설 배치 계획에는 장애

인 이용 편의시설을 갖춘 전용시설을 일부 확보할 계획이며, 회관건축 시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시설 완공후 도지사과 시장, 군수들의 운영비 부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완공되면 바이오 전시관 내부시설비와 그에 따른 관리 운영경비는 충청북도에서 부담하도록 도청 측과 협의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무료로 사용할 계획이며, 공연장 등 일부 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규강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께서 단체장들과 협의에 의하여 장소를 이미 결정하고 난 후에 타당성 조사나 공청회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제163회-제2차 본회의]

다짐하는 말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건립은 2002년도 바이오 엑스포에 관련하여 보고되고 재정지원을 약속받은 바 충청북도 부지 사용 승낙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추진할 경우에도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약 한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일 뿐 아니라 시기가 매우 지연됨에 따라 현재 부지의 입지조건과 사업시기를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위원 현장방문 시 제시된 조성계획도와 종전의 계획도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의 부지 조성계획은 당초 계획에 2,700명 규모로 계획이 되었던 것이 7,000명 규모로 확장하고, 시민체육공원, 시민광장 등 공공투자부문을 단지화 해서 교육문화회관 이용자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교육문화회관 내에 바이오전시관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첨단 자료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충청북도로부터 보장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바이오전시관은 충청북도에서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별도의 보장을 받는 등의 사안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충

청북도에서 관심을 가진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저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립 예정지인 청주시 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중동 현 위치를 통과하는 시내버스는 오창방면과 주중동 종점을 2.3분 간격으로 시내 약 35개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창단지 내 8,500여 세대와 율량2지구 1만 300가구가 조성되면 입주할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지 내에 놀이기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충청북도의 조성계획에 의하면 조이파크 내에 번지점프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놀이기구 단지나 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골프장 등과 자연스런 공간 분리, 독립성 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건립 부지 주변의 동산 등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간이 독립적으로 유지하는데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골프장이나 조이월드 등 주변 시설 설립계획과 교육문화회관 건립 시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교육문화회관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의 시설 인근에는 시민광장, 체육공원 등 공공투자부문은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안전관리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문화회관 개관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밀레니엄 타운 예정지 주변의 러브호텔 난립 방지 등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밀레니엄 타운은 충청북도의 계획에 의한 조성으로 단지 내에 러브호텔 등은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충청북도와 청주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유해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종합스포츠센터나 산남3지구 교육정보원 건립이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문화회관과 연계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2년도, 2003년도에 정부예산으로 약 100억원을 요구한 바 있어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셔서 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가운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수조정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교육문화회관 설립 이후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정보원은 산남3지구에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설치할 계획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는 중기 5개년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장기계획으로써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질의하신 교육문화회관을 도와 공동으로 운영한다면은 관리운영 체계나 책임소재 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이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진옥경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필요하다면은 조례제정 등 적극

[제163회-제2차 본회의]

적인 방법으로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현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답변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송대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현 위원

송대현 교육위원입니다.

고규강 위원의 바이오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숙원사업이 마련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오히려 예산이나 규모가 적은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성격에 대한 질문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칭 명칭이 말해 주듯이 바이오교육문화회관으로서 바이오 전시기능 위주의 교육회관, 설명은 전에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원이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장이라는 목표에 부합되지 않으며, 바이오 전시기능은 이 활동의 일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된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시기능 위주의 교육문화회관 건립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교육감께서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칭이라고는 하지만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을 내놓았다는 집행청의 발상에 대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 성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답변을 요구하면서 상징적인 의미의 특성화된 명칭이라고는 하나 타시·도의 교육문화회관의 전시기능이 3% 미만인데 비하여 우리의 30%가 상회하는 전시관 기능의 교육문화의 건립이 과연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서 이 시대가 필요한 7차 교육과정의 체험활동에 타당한 것인지, 대단히 그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설립의 목적과 운영에 대한 대단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그 부분은 그 타이틀이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설립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 의지를 집행청에 확고히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고규강 위원님이 폭넓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교육감님은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일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부교육감 김용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교육감님이 해 주세요.

● 교육감 김천호

송대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필요성, 또 당위성 이런 것은 다 아시는 말씀이라 재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는 잘 이해가 충족되시지만 전시공간이 너무 많아가지

고 당초 학생문화회관 성격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답변내용 중에 있습니다만은 설립, 시작이 이루어진 배경이 그렇게 돼 있고, 특히 바이오엑스포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물론 도청에서 주관했습니다만은 150만 도민의 바람 속에서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개최된 21세기형의 새로운 첨단과학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까지 국내에서도 16개 시·도 중에 면적규모나 인구수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렇게 위에 있지 않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문화적인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충북을, 이 지역을 21세기의 또 새로운 천년, 이 시대에 발전시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첨단과학문화를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시켜야 된다는 것은 도민이 다 인정을 하는, 공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 교육을 생각하는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지역의 필요성, 지역발전의 전략, 이런 데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인재육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우리 교육이 학생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들이 당연히 역할을 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몇몇 개의 학생문화회관, 교육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저도 대구라든지 몇 군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주로 체육활동 중심의 이러한 집회활동 중심의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는 탈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하나의 종합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육이라든지 아까 진옥경 위원님이 걱정하신 놀이시설,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부대시설을 많이 지금도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교육적으로 문화와 교육과를 잘 조화롭게 하는 특색있는, 그야말로 특성화된,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학생문화회관이 마련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침 우리가 바이오산업이 충북의 전략산업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러한 산업으로 지금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가 학생문화회관의 교육적 기능을 가미하기 위해서, 특히 바이오쪽에 교육적인 기능을 가미하면 그야말로 종합적인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격은 분명히 학생의 문화증진과 또 문화의 세계에 종합적인 문화마인드를 키워내기 위한 그러한 공간을 지향하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거기에다가 첨단과학, 또 특히 우리 충북의 전략산업이면서 세계수준의, 또 세계적인 그런 발전추세에 맞는 이러한 첨단산업을 가미하는 이런 것을 조화롭게 이렇게 마련해서 문화회관을 건립하면은 그야말로 학생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했던 겁니다.

성격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송대현 위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 답변하시는 걸 또 제가 제지했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한 가지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학생 성격의 학생의 문화활동 중심, 학생의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심는데 목적을 두고 좀 특색있게 충

북의 첨단과학인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와 연계해서 특성화된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하겠다는 의지, 저도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를 저희가 전시해서 홍보하고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절대로 나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교육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격이 학생들의 교육문화와 문화창달의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데는 바이오전시관이라는 충북의 전략산업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7차 교육과정의 체험학습이라든가 각종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도 첨부돼서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라고 하니까 바이오교육을 선전하는 회관인지, 충청북도 회관인지, 충청북도 김천호 교육감이 충북의 학생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교육에 문화를 심고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공간인지 이름이 혼동인가요. 거기에다가 교육 집행청에서 정하는 이름이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바이오자가 앞에 붙어서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바이오를 교육하는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혼돈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가칭 명칭을 잡았을 적에 이 성격에 대한 집행청에 의

구심이 가서 여쭙본 것입니다.

확실하게 김천호 교육감이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바이오라고 부분이 굳이 강조되려면 학생교육문화회관 및 바이오전시관이라든가, 뒤로 넘겨서 부수적인 거니까, 굳이 바이오라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이런 명칭이 가칭이라도 올라와야지, 처음 타이틀서부터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누구든지 오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용호

부교육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교육재정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또 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성격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송 위원님께서, 지금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에 지역산업으로 하는 것이 바이오테크가 핵심산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도만 이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

에 우리 충청북도, 앞으로 학생들이 가서 일할 부분도 바이오산업이 많이 들어오면 바이오에 가서 그 일을 해 줘야 됩니다. 취업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바이오에 대한 충분히 교육을 받는다면 그 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용이할 것으로 보면서, 또 성격상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설치계획을 보시게 되면 그 7차 교육과정 운영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바이오전시관이 900명입니다만은 그 전시물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보면서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방금 걱정하신 부분은 대공연장을 1,000명을 확보를 하고, 테마식 체험활동 영역실, 취미여가활동실, 전통문화활동실, 첨단정보활동실, 평생교육실, 이런 시설을 확보를 하면서 이것도 부족한 것으로 봐서 다른 지역에서 부족한 것으로 봐서, 그래서 종합스포츠클럽센터를 특별교부금이 아닌 기획예산처에서 직접 받는 국고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바이오가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다 바이오 관련 특별활동이라든가 교육과정만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일

송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죠?

● 송대헌 위원

예

(이기수 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함)

● 의장 이상일

예, 이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학생문화회관, 참 이것은 어제 오늘 논의됐던 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교육청의 숙원사업이며, 또 바이오산업을 우리 도의 특성화 산업으로 하고 있는 중에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제가 3대에 아마 교육위원 때 그 학생문화회관 건립 문제 때문에 각 시·도를 가 봤습니다. 부산 학생문화회관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만은 그쪽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했어도 예산이 아주 대단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규모가 아주 상당히 대단할 정도로 건립을 했는데, 물론 우리 도는 재정적인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9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건립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전시관을 3분의 1을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양쪽을 다 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대개 이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개 전시공간을 2.5%인가 아마 10%미만 정도로 돼 있고, 대개 다른 시설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전시시설이 과다하게 돼

있으면 나머지 시설은 평수가 없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문화회관, 또 바이오학  
생문화회관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  
고서 출범하는 이 마당에 이왕 한다면 이  
게 한번 하고서 내년에 또 하고 몇 번 이  
렇게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우  
리는 이게 1세기에 한 번 있는 사업이라  
고 봐도 과언이 아닐텐데, 단번에 이 사  
업을 종료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주 또  
하고 협의해서 말입니다 좀 큰 규모로 이  
것을 시작을 해 갖고서 금년에 완성을 못  
한다든지 하면 뭐 몇 년이 걸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양쪽의 목적을 다 부합시  
킬 수 있는 그런 바이오문화회관을 건립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상은 학생문화회관  
건립시에 당초에 행정질의에서도 제가 한  
번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할 때 양쪽을 충족할  
수 있고, 앞으로도 후회없는 그런 학생문  
화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어떻습  
니까? 지금 우리 교육재산을 우리 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혹시 얼마나 되며,  
또 도 재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것을 기부채납을 한다면 앞으로를 위해서  
라도 바로 우리 소유로 받을 수 있게끔

등기나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  
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기수 위원님께서 우선 사업규모를 좀  
더 종합적이고 크게 할 의향에 대해서 질  
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재정 형편상 195억을 투  
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큰 사업입  
니다.

보통 저희들이 고등학교 30학급 규모를  
세우는 학교보다 더 큰 규모의 대단위 사  
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이용이  
바이오전시관을 제외해 놓고 나면은 상당  
히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900명 중  
에서 1,200명을 제외해 놓고 다른 시·도  
의 체육시설을 제외 놓는다면 저희들이  
더 큼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시·도의 학생  
교육문화회관에는 체육시설이 포함된 시  
설이고, 저희들은 체육시설을 별도로 구  
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에 대  
해서는 다른 시·도와 그렇게 협소하지  
않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것을 종  
합적으로 수립해서 하기보다는 1단계로  
우선 지금 현재 추진하는 195억 공사를  
마친 후에 체육시설공사를 추가하는 안으  
로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청에서는 더 바

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드리겠고요, 두 번째, 토지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그것을 소유권을 직접 무상 이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재산의 소유가 충청북도 도로 등기가 나고, 다만 관할청이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교육재산 중에서도 상당부분을 도지사가 관리하는 소유권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면적도 있고, 또 반대로 교육감이 관리하는 재산 중에서도 일부의 재산이 도로에 편입돼 있거나 과거부터 시에서 활용하는 재산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권을 도지사 입장이나 교육감 입장에서 완전히 무상으로 7,000평을 준다는 것은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될 뿐 아니라 현재 법령상으로도 무상으로 이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 건립됐을 때 우리 김천호 교육감의 소유로 등기가 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건물은 우리 교육감 명의로 되고, 나머지 토지는 그냥 무상 사용으로 해 갖고서 지사가 소유하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면

아주 토지의 7,000평과 건물을 다 우리 교육감 명의로 기부채납한 걸로 해 갖고서 받아 갖고서 등기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되는 겁니까?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행정용어상으로는 저희들이 국가기관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기부채납은 지금 법령의 규정에 없고, 다만 무상양여가 가능하나,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이 도교육감 입장이나 아니면 도지사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기 때문에 주인은 충청북도입니다. 다만 관리청이 교육감이나 도지사냐의 문제이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도청쪽에서도 검토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그 사용을 토지를 하라, 그래서 무상양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상양여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재산권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교육감이 소유권자 못지 않게 그 재산권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 교육감 김천호

그 7,000평에 대해서는요 작년도에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교육감에게 영구 무상임대, 이런 걸로 공문서 형식으로 저

희들이 받았습시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는데는, 다만 그 소유권은 지금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못 받았지만은 영구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쟁의 소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그건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의장 이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규강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예, 고규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규강 위원

고규강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기획관리국장님, 세 분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타시·도의 이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서 안 건립한 도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뭐가 이 교육위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느냐 하면은 바이오산업 때문에 전시관이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합니다만은 7,000평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해서 바이오라는 그 명칭이 앞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공간을 1,200평, 3분의 1 공간을 준다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 엄청 주객이 전도된, 주체로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이오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보면 그 타이틀이, 타이틀만 보면 그것을 보고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라고 했을 때는 바이오를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명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도민들의 문화공간을 설치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도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주체가 도교육청이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간사용에 있어서 바이오의 여러 가지 전시관이라든가 거기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20% 정도의 한 800명,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간담회에서 이것도 해결 안되면은 도저히 이 조례를, 교육문화회관 승인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의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교육청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은 도청을 생각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어려운 게 있어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용호

부교육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칭을 바이오라는 말을 쓴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리라는 생각은 사실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키우는 산업이 바이오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외적으로도 바이오를 홍보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명칭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을 짓고 나면 어차피 조례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교육위원회도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확정을 해야 되고요, 또 도의회까지 가서 또 확정을, 확정할 조례니까, 그렇게 가야 되니까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명칭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사용에 있어서 800명 문제도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은 1,200명 중에 900명이 전시관이고 나머지 300명은 정보관으로 쓰는 건데, 정보관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고요, 이 900명 문제인데, 900명은 당초에 저쪽에서 도청에서 1,200명을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전체적 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했는데, 그게 지금 전시물이 지금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고 초·중·고생들이 전부 보고 배우고 하는 그런 가까운 학습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는 사실 생각할 때 어차피 도청에서 해주면 고맙다, 우리 초·중·고생들을 위해서 다 해 주는 거니까 우리야 그 이상 고마울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쪽 바이오기획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좀 어떻게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시물의 양이 최종적으로 나올테니까 그때 봐 가지고 확정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뭐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런 의견 계시면은 아마 우리가 가지 않는 한 받아들일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일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옥경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진옥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에 추가하는 질의입니다.

아까 명칭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저는 위원님들 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교육 집행청의 입장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같이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양보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바이오 부분도 조금 더 열린 생각으로, 다만 아까도 지적했듯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자료들을 그러니까 아주 학술적인 그런 어려운 자료라든지 일반인을 위한 그런 어려운 자료들을 넣지 않고 아주 소상한 그런 설명들이 첨가된 형태로 해서 바이오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 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논란이 왜 이렇게 되는가, 또 영역부분에서의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명칭의 논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우리가 설치에 관해서 심의하는 이런 과정이 매우 뭐랄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제

가 아까 첫 번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달라고 집행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일반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여론에서의 반대여론을 생각해서 심의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해한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짧은 제 소견에서는 이런 결정 절차가 사실은 단체장들이 어쨌든 판단이 있으셨겠죠. 그렇지만은 그 판단에 앞서서 과연 학생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또 지역 학부모라든지 요구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선행되고 그것이 파악된 위에 그 판단들이 있으셨으면은 이렇게 갑작스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들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아래로부터의 요구부터 시작해서, 또 수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그리고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이것이 바뀌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한다는 전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물론 공조체제라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도 납득할 수 있지만은 제가 첫 번째로 이것을 넣은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앞으로 그것을 해

주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쭙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 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 지금 답변을.....

● 진옥경 위원

답변을 해 주시면은 제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교육감 김천호

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하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또 우리 도교육청 자체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아는데, 그 내용이 아마 다른 사업은 그런 일이, 또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아서 앞으로 교육행정에 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잘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진옥경 위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요, 이게 밀레니엄 타운 자체, 그러니까 지금 교육문화회관뿐만 아니라 밀레니엄 타운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논란의 소지가 많고요, 어떤 것들을 넣을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작

년 12월달에 충북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도 정계획 12대 과제 발표의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런 단체장을 맡으신 분들의 어떤 결정이 어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그 부분의 하나로서 이제 저기하는 것이고, 송구스럽지만 다시 한번 여쭙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이기구단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본 것은 이제 아이들이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어릴수록 그렇지만은 커서도 놀이기구 쪽으로 많이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것이 뭐랄까, 타는 것들도 많고 요금을 줘서 하는 것들이 수입은 되겠지만은 우리가 교육문화공간들을 확보하고 거기서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주어진 놀이기구를 타고 노는 것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덜 교육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그렇게 뭐랄까, 아이들이 정신없이 노는 데만 팔리지 않는 놀이시설들을 좀 협의하실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러브호텔 부분이 있는데요, 청주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밀레니엄 타운 예정지 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주변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무슨 오창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벌써 들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가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인근에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정말 전국을 대상으로 이 교육문화회관을 개방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난립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시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복안이 없으시다면 앞으로의 협의과정 속에서 이것은 충분히 요구하시고 좀 정확할 수 있는 이런 강제적인 어떤 요구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일

진 위원님, 답변을 더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 진옥경 위원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의장 이상일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설치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 건립은 학생과 도민의 숙원사업인만큼 본 계획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폐회)

[제163회-제2차 본회의]

---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교육국장 김전원,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  
총무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백남권,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안세열.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4. 2. .

의 장 이 상 일 이 상 문

위 원 성 영 용 성 영 용

위 원 송 대 현 송 대 현

의사국장 이 상 기 이 상 기



(별첨 1)

# 議 事 日 程 (案)

第163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4. 2. 10. ~ 2. 12.(3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2월 10일(화) (11:00)         (14: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1.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4. 2. 10. ~ 2. 12.(3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2월 11일(수) (11:00)	<input type="checkbox"/> 의안협의(집행청 설명)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간담회(의안 처리) ○ 2004. 1. 28. 의견청취 결과분석 ○ 현장 확인 · 조사 결과에 따른 의견협의	※본회의 휴회 ~
2월 12일(목) (11:00)	[ 제2차 본회의 ]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 설치 계획안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63-1 호
의결 연월일	2004년 2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4년 2월 4 일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63-호

제출년월일 : 2004. 2.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총 무 과

## □ 개정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 2004.1.29. 대통령령 제8247호) 및 동 규정시행규칙(개정 2004.1.3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4호)의 개정에 근거하여 기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정원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823명에서 148명이 증원된 2,971명으로 함.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823명 ⇒ 2,971명(증 148명)
    -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없음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810명⇒2,958(증 148명)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
    - 충청북도교육청 : 표준정원 2,971명, 보정정원 3,060명

## □ 개정근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 (2004.1.30)]

## □ 개정 조례안 : 붙임

## □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 중 “2,823명”을 “2,971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2,810명”을 “2,95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823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2,810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u>2,971명</u>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2,958명</u></p>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 2004.1.29 대통령령 제8247호)

제14조(표준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 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정원의 규정) ①시·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 2004.1.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4호)

제3조(표준정원)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③영 제14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

구 분	표준정원	보정정원	비 고
충청북도교육청	2,971	3,060	

(별첨 3)

서면답변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관련 자료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관련 자료

### □ 근 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 2004.1.29.)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 2004.1.30.)
-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4-1 호)
-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도입 등 관련 조직·정원담당자 회의자료(2004.1.30.)

### □ 목 적

-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행정직 배치 확대 및 사무책임자의 상위직 경력자 배치로 교육행정의 전문성·책무성 강화

### □ 주요내용

- 「총정원제」를 「표준정원제」로 전환
  - 총정원 2,823명 ⇒ 표준정원 2,971명 (148명 증)
  - 집행기관(본청, 직속, 지역교육청, 각급학교) 정원 2,810명 ⇒ 2,958명
  - 보정정원 : 표준정원의 3% 인정
  - ※ 보정정원 :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표준정원에 추가 부여하는 정원
  - 표준정원 운용주기 : 2년 단위로 고시(현 표준정원 : 2005년 8월까지)
  - 표준정원 산식구성 기준 : 학교수, 학교규모, 지역교육청 수 등 구성

### ○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 기준 : 6급(28%⇒30%), 7급(38%⇒44%), 8·9급(26%⇒18%)
- 증·감 예상인원 : 6급 64명 증, 7급 130명 증, 8·9급 46명 감
- 조정이유 : 초·중등학교 행정실 책임자 최저 7급 이상 책정  
초등학교 행정실 책임자 : 최저 7급 이상 책정  
중·고교 행정실 책임자 : 최저 6급 이상 책정



## □ 향후 추진계획

### ○ 조례개정에 따른 교육규칙 개정

- 정원의 총수 : 시·도 조례로 정함
- 직급별·단위기관별 정원 : 교육규칙으로 정함
- 근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 ○ 신규채용 계획

- 2004년도 상반기 중 추진(채용인원 추후 확정)

### ※ 시·도별 표준정원 증가(현재 정원대비 증가율)

- 충북-148명(5.2%증가), 강원-108명(2.8%증가), 충남-64명(1.5%증가)
- 전북- 3명(0.07%증가), 전남- 36명(0.7%증가), 경북-68명(1.2%증가)
- 경남- 95명(1.7%증가), 제주- 55명(4.8%증가), 서울-34명(0.4%증가)
- 부산-158명(4.3%증가), 대구- 66명(2.6%증가), 인천-127명(4.5%증가)
- 광주- 49명(3.2%증가), 대전- 36명(2.2%증가), 울산-106명(7.9%증가)
- 경기- 1,783명(21.1%증가)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 2004.1.29 대통령령 제8247호)

제14조(표준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정원의 규정) ①시·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 2004.1.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4호)

제3조(표준정원)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②영 제14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

구 분	표준정원	보정정원	비 고
충청북도교육청	2,971	3,060	

- 일시 : 2004. 1. 30(금). 14:00
- 장소 : 교육혁신위원회 회의실



([www.moe.go.kr](http://www.moe.go.kr))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도입 등 관련  
조직 · 정원담당자 회의자료

2004. 1.30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

[별표 1]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산식(제3조제1항 관련)

1. 특별시·광역시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 (5.793702 × 학교수 증감분 × 0.6 + 0.1919011 × 학급수 증감분 × 0.4) × 1.15 + 70.9 × 2국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 57 × 4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 40.3 × 2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2. 도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 + (5.022132 × 학교수 증감분 × 0.6 + 0.3594281 × 학급수 증감분 × 0.4) × 1.15 + 61.6 × 2국6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 51.5 × 4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 31.6 × 2과 지역교육청 증감분

비고 : 1. 현정원에 대한 조정정원은 각각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현정원 + {1.720094 × (학급수÷학교수)의 자연로그값} × 학교수 + 168.1659 × 2국6과 지역교육청 수 + 177.8311 × 4과 지역교육청 수 + 105.4566 × 2과 지역교육청 수 + 161.7123] ÷ 2

나. 도

[현정원 + {1.910288 × (학급수÷학교수)의 자연로그값} × 학교수 + 123.1787 × 2국6과 지역교육청 수 + 49.33297 × (2과 지역교육청 수 + 4과 지역교육청 수) + 225.1432] ÷ 2

2.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는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 증감분은 각각 현정원을 조정한 연도에 대한 당해연도의 증감분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4 - 1 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4년 1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단위 : 명)

구 분	표준정원	보정정원	비 고
총 계	63,881	65,789	
서울특별시교육청	7,358	7,578	
부산광역시교육청	3,784	3,897	
대구광역시교육청	2,602	2,680	
인천광역시교육청	2,930	3,017	
광주광역시교육청	1,577	1,624	
대전광역시교육청	1,669	1,719	
울산광역시교육청	1,432	1,474	
경기도교육청	10,212	10,518	
강원도교육청	3,876	3,992	
충청북도교육청	2,971	3,060	
충청남도교육청	4,257	4,384	
전라북도교육청	4,105	4,228	
전라남도교육청	5,054	5,205	
경상북도교육청	5,462	5,625	
경상남도교육청	5,397	5,558	
제주도교육청	1,195	1,230	

붙.

第16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閉會中)

## 懲戒・資格審査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209
II. 부 록	
1.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213



## 懲戒・資格審査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2월 27일 (금요일) 10시 38분

議事日程 (제163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정계·자격심사소위원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 附議된 案件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10시 38분 개회)

#### ● 위원장 송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계·자격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2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규강, 김남훈, 성영용, 이기수 교육위원으로부터 지난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정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했던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을 다시 심의하기 위하여 정계·자격심사소위원회 개최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40분)

#### ● 위원장 송대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3회-제2차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의 활동은 2월 27일 1일간으로 하여, 지난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을 다시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2.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10시 41분)

● 위원장 송대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 위원장 송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속개에 있어서 성영용 위원이 불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위원님이 참석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12시 16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21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송대헌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 나가셨던 분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항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은 찬성 4표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송대현, 간사 김남훈,

위원 고규강, 성영용, 이기수.

※ 부 록

- ▶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제16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폐회중)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4. 3. .

위원장

송대현



(별첨 1)

## 懲戒・資格審査小委員會 議事日程(案)

第16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閉會中)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2월 27일(금) (10:30)	<p data-bbox="363 459 824 498"><b>[제2차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b></p> <ol data-bbox="391 550 775 676" style="list-style-type: none"><li data-bbox="391 550 775 589">1. 의사일정 결정의 건</li><li data-bbox="391 637 775 676">2. 진옥경 교육위원 징계의 건</li></ol> <p data-bbox="343 821 583 859">※.비공개회의 진행</p> <p data-bbox="384 898 980 937">0 의사일정 제2항(징계의 건) 상정후 표결시까지</p> <p data-bbox="343 1555 459 1593"><input type="checkbox"/> 산 회</p>	

